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 - 10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정비하고,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세입근거 항목 추가(안 제3조)

- 「주차장법」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

나. 특별회계 세출 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항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
- 일반회계로의 전출(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- 「주차장법」 제22조(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) 및 제32조(이행강제금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제2호
(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)에 의거하여 생략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라.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(2013.11.22) : 수정의결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조 제7호,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
2. 일반회계로의 전출(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세입)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	제3조(세입) 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삭제	12. <u>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</u>
13. · 14. (생 략)	13. · 1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세출) (생 략)	제4조(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조 제7호,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</u>
	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위탁
	2. <u>일반회계로의 전출(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)</u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: 안 제4조제2항(신설)

-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조 제7호,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위탁
2. 일반회계로의 전출(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전출금	17,000,000					17,000,000
	소계(b)	17,000,000					17,000,000
□ 총 비용(a-b)		△17,000,000					△17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 (해당없음)

5. 기타의견

-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세입은 발생하지 않음
- 향후 세입 대비 세출의 현황을 파악 후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출금을 결정코자함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전미숙
연락처	02-3153-9652